

공공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

 추진부서 | 경기도 상하수과 ☎ 031-8008-6938

개선배경



- 상수원보호구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지역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요구 민원이 해마다 발생
 - ※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 용도변경을 총 호수의 5% 이내로 제한
-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6개월간 매주 측정하여 수질 기준의 50%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총 호수의 10%까지 가능하나 기상이변, 불명수 유입 등으로 매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% 이내로 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 - ※ 2019년 남양주시 마현·능내·송천 공공하수처리장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수질 기준의 50%를 초과하여 채수 중단
 - ☞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해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채수 시 「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」을 준용토록 해석하여 자연변수로 인한 채수 일정 변경 및 평상시와 수질 결과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재시험 후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 행위제한 완화 지역으로 고시함

개선내용



	개선 전	개선 후
음식점 비율	총 호수의 5% 이내	총 호수의 10% 이내
채수 방법	매주 1회 측정, 1회 초과 시 중단	기상이변 시 일정 조정,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재시험
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	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	수질 기준 50% 내 방류

-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매주 50% 이내로 준수하는 것이 시설 개선으로 가능한 것을 증명한 사례
- 향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

추진과정



- '23. 1.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사전 조사
- '23. 4. 6. 현장 중심의 환경규제 혁신 및 개선과제 제출 (도→환경부)
 - 음식점 확대를 위한 채수 시 평균 수질 도입, 기상특보 시 연기토록 건의
- '23. 5. 24.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
 - 음식점 비율 확대 등 의견 제시
- '23. 6. 22.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
 - 음식점 총 호수 완화 등의 필요성 공감, 다만, 수질 영향 등을 연계하여 제도 개선 검토
 - 음식점 허용 호수 완화를 위한 채수 시 예외적 또는 자연적 변수는 관련 「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라 운영 가능
- '23. 8. 3. 상수원 관리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
 -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비율 및 면적 확대 방안 협의 등
- '23. 8. 7. 행위제한 완화 관련 채수 방법 회신 ('23.6.7. 질의)
 - 「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라 자연적 변수로 인한 채수 일정 변경의 불가피성 및 수질분석 결과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분석 후 판단
- '23. 2. 9. ~ 8. 9.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추진
- '23. 8. 25.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

개선효과



- **음식점 비율** : 광주시 4개 구역 기준 음식점 비율 확대(5%→10%)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해소하였고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제한 완화 요구 합리적 수용 가능
- **채수 방법** : 기상이변 시 연기,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재시험하여 적용 대상 확대
- **상수원 수질** :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 유도로 상수원 수질 개선
- **지역경제 활성화** : 음식점 개업 따른 주민 채용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〈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검사 〉



경안 공공하수처리장



광주 공공하수처리장



검천 공공하수처리장



수정 경안 공공하수처리장

〈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관련 언론보도 〉

KBS 2023년 08월 25일 (금) 사회

경기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1.5 행위제한 완화.. 음식점 2배로

경기도는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시 4개(검천, 수정, 경안, 광주) 공공하수처리구역 1.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.

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체 가구 수(500가구)의 10%까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. 기존에는 5%까지 가능했습니다.

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수질검사에서 기준치의 50% 이하로 하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내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은 2018년 남양주시 전종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 / 경기도 제공]
 채보하기
 전화 : 02-781-1234, 4444
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 카카오톡 : 'KBS채보' 검색, 채널 추가
 네이버,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!

KBS (2023.8.25.)

연합뉴스 2023년 08월 25일 (금) 종합

경기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1.5 행위제한 완화.. 음식점 2배로

(수원=연합뉴스) 최원홍 기자 = 경기도는 25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가운데 광주 4개(검천, 수정, 경안, 광주) 공공하수처리구역 1.5를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.

경기광주시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지역 [경기도 제공, 채보 및 DB 금지]

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체 가구 수(500가구)의 10%까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. 기존에는 5%까지 가능했다.

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수질검사에서 기준치의 50% 이하로 하수를 방류하는 등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.

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내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은 2018년 남양주시 전종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.

chan@yna.co.kr

연합뉴스 (2023.8.25.)